

인턴학기제 운영규정

□ 제정 : 2012. 6. 29

□ 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본교 학칙 규정 제31조의 9에 의거 취업능력개발과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 직업 의식의 고취와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학기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턴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내·외 인턴학기는 모든 계열(전공) 또는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턴 기간) 국내·외 인턴학기는 90일(휴일포함) 이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성적평가 및 학점부여) 국내외 인턴학기 이수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P”, “F”로 성적을 평가하고 “인턴학점”으로 표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 ① 인턴학기로 취득하는 학점은 최대 18점(전공학점만 인정) 이내로 한다.
- ② 인턴학기에 대한 성적평가는 연수 종료 후 연수생이 제출하는 인턴학기 연수보고서(20점)와 인턴 연수기관에서 제출하는 인턴학기 연수기관 평가서(60점) 및 책임교수의 인턴학기 현장방문 지도보고서(20점)의 점수를 종합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P”로 평가하고, 인턴학기 책임교수가 평가한다.
- ③ 인턴학기 책임교수는 ②항의 성적평가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취·창업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된 인턴학기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연수기관의 선정) 인턴학기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관으로서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②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③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 ④ 전공 관련 유관 직종업체로 선정한다.
- ⑤ 기타 인턴학기 연수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조(협약사항) 본교와 인턴학기 연수기관이 체결하는 인턴학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0-6 인턴학기제 운영규정

- ① 산업체 현황
- ② 인턴 기간
- ③ 인턴학기 기간 중의 보건·위생, 산업재해의 예방, 기타 보험가입 등
- ④ 인턴 연수생에 대한 대우(후생복지 및 근무수당 등)
- ⑤ 기타 효과적인 인턴학기 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연수기관의 변경) 국·내외 인턴학기를 이수중인 학생이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 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없는 때에는 본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 ① 연수기관의 부도
- ② 연수기관의 휴·폐업
- ③ 연수기관의 도산 등

제8조(신청자격 및 신청횟수) 인턴학기 연수과정의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에서 2년제 학과 학생의 경우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년제 학과 학생의 경우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년제 학과 학생의 경우 10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턴학기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인턴학기 연수협약 및 지원신청서의 제출) ① 인턴학기 연수 협약서는 매 학기 수업일 수 1/4 이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인턴학기 연수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전 본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인턴학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턴학기 연수 대상자 선발) 인턴학기 연수 대상자는 본 대학교와 연수기관이 정한 선발기준에 의거, 인턴학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연수분야와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

제11조(수강신청) ①인턴학기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학과장의 지도하에 일괄 수강신청을 한다.

- ② 인턴학기 연수 대상자는 본 대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인턴학기 수강신청이 취소된다.

제12조(연수지도) ① 총장은 인턴학기 연수교육에 참가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각 인턴기관별로 인턴학기 책임교수를 위촉한다.

- ② 인턴학기 책임교수는 연수기관을 방문하여, 연수기관 및 연수생의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턴학기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월 1회 이상 순회지도를 하여야 하며, 연수생과 연수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인턴학기 책임교수는 연수기관 방문 후 인턴학기 현장방문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인턴 학기의 경우에는 이를 E-mail, 유선, Fax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인턴학기 연수생의 의무) 인턴학기 연수생은 당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인턴학기 주간보고서, 인턴학기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인턴학기 연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수생은 원칙적으로 성적평가 및 이수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연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인턴학기 연수를 통하여 알게 된 연수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④ 인턴학기 연수 도중에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책임교수를 통하여 본 대학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인턴학기 연수 중 연수기관 내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②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③ 연수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④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